

#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5,653,170	8,869,595
일반회계	228,260,679	6,847,820
일반회계	228,260,679	6,847,820
기타특별회계	67,392,491	2,021,7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40,409	232,2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9,474	13,484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1,209	25,836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961,569	718,84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186,385	275,5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59,069	343,772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41,448	61,24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805,192	294,156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08,160	15,245
기반시설특별회계	90,331	2,710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1,289,245	38,6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10,6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